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(조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99 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:조 국·서왕진·정춘생

이해민 · 김준형 · 황운하

차규근 • 신장식 • 김선민
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인 독도와 동해의 경우,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및 동해 명칭 표기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표기를 알리고, 영토주권을 수호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.

그러나 이처럼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이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국제적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외교활동 등 종합적인 대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틀을 제공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 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 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(안 제2조).
- 다.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라.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확정하여야 하고, 이에 따라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마.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7조).
- 바.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,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(안 제8조).
- 사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

(안 제9조).

- 아.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안 제10조).
- 자.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(안 제11조).
- 차.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과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의 영토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 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활동) ①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 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한 다.
 - ②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규범 논의

- 에 적극 참여하고 타 참여국, 국제기구 및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5조(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확정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기 본구상 및 추진목표
 - 2.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 - 3.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교육 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
 - 4.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관련 지도·사료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제11조에 따른 독도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
 - 6.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
 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
 - ③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
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협의를 요 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한다.

- ④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영 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·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7조(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) ① 기본계획 심의 등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 파악 등) ① 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하여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여 외교부장관 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도 및 동해에 관한 표기에 잘못이 있음을 파악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 및 국제기구에 정정·말소 등의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9조(독도 및 동해 영토주권의 교육 및 홍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활동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) 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다

-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국제적 차원의 독도 및 동해의 조사 ·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
- 2. 국제사회에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활동
- 3. 국제회의 · 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
- 4.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11조(독도의 날 지정) ①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국고지원)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13조(연차보고) ① 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

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 수립·확정에 관한 경과조치)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·확정하여야 한다.